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10	관리 부서 학생처

제 1 장 학 생 회

제1조(학생회 조직)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본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2조(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회비를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확대간부회에서 정하되,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4.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당국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회 회원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활동이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총장은 그 일부를 학생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10	관리 부서	학생처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등

제7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가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조(제정) 예산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10일 내에 총학생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예산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과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에 지장에 초래할 경우 회장은 학생지원 서비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추경예산의 금액은 확대간부회에서 정하되 대의원회의 승인 및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 공개하여 승인 받는다.

제11조(감사) 본회는 회계연도 중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대의원회의와 대학의 감사 및 재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의 총학생회비에 집행에 대한 감사는 학기당 1회, 총 2회를 실시한다.
2. 대의원회 감사 후 대학이 총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 까지이다.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3/10	관리 부서 학생처

제13조(회칙개정 발의) 발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 대의원회, 확대간부회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2. 각 자치활동기관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다.

제14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확대간부회 의장이 공고한다.

제15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20일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되 의결이 안 된 사항은 확대간부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공포)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된 개정안은 한 학기 이후부터 적용된다(단, 공포된 선거법 개정안은 해당학기부터 적용된다).

제 2 장 확 대 간 부 회

제17조(지위 및 구성) 확대간부회는 본 회의 운영기구로써, 의장인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대의원장, 교지편집장으로 구성된다. (단, 정기총회 시 본 대학 모든 학생은 참관 할 수 있음)

제18조(의장) 확대간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총학생회장 께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확대간부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생회 예산을 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
3. 학생회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학칙개정안을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소집) 정기와 임시 확대간부회를 둔다.

1. 정기 확대간부회의는 월 1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1학기 전, 년 1회로 한다.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4/10	관리 부서	학생처

3. 임시 확대간부회는 총학생회장이 소집하거나 확대간부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의결) 확대간부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총 학생회

제22조(지위 및 구성) 총학생회는 본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의 제반사업 계획서와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2. 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써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며, 학생회 사업을 기획 및 총괄하고 4대 자치기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한다.
3.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들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학생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4. 총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부 서 명	국장명수	국장 및 국의 업무
사 무 국	1	학생회비의 재정관리, 5대 자치 기관의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국
문화기획국	1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대학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국
연대사업국	1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새로운 연대를 시도하고 타 학교와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집행국
정보선전국	1	학내, 학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선전활동을 담당하는 집행국
환 경 국	1	학내의 교육환경, 복지환경의 증진과 개선을 담당하는 집행국

제24조(각 부서별 활동) 부서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5/10	관리 부서	학생처

제25조(총학생회 간부 규정) 총학생회 간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대학 총학생회의 간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총학생회의 간부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및 통솔력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학칙을 위반으로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상황이 3/4 이상인 자
- ③ 총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총학생회 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차장은 국장이 지명한다.
- 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26조(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지위)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확대간부회 의장, 총학생회 의장이 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제27조(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임기)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임원이 궐위되면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에는 각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대간부회 소집권(개최 시 의장)과 대의원회의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2. 회칙 개정안을 확대간부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발의한다.
3. 학생회 각 부장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4.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5.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6/10	관리 부서 학생처

제 5 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선거규정

제29조(선거규정) 본 규정은 총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학인으로서의 사명완수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제31조(자격기준)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및 통솔력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 학기 성적이 평균 C+ 이상인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 상황이 3/4이상인 자
5. 우리대학 및 타 대학의 자치기구 간부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
6.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한 자
7. 상기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판단 후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자

제32조(선출방법) 선거는 직접, 평등, 보통,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33조(선출시기) 최소한 직전 총학생회 임원 임기완료 5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34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둔다.
- ② 선관위는 확대간부회의 임원으로 한다.
- ③ 선관위와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④ 선관위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7/10	관리 부서	학생처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내규 준수)

제36조(입후보 등록) 입후보 등록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등록은 정후보 혹은 단일후보로 한다.
- ② 등록기간
 1. 1차 등록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2. 1차에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등록기간을 1차 등록이 끝난 후 7일 이내로 한다.
- ③ 입후보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인 명부
 3. 포스터용 소견서 및 사진 2매 (명함판)
 4. 신분조회 위임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5. 각종 개인 정보공개 동의서(범죄경력, 학점, 학기 등)
-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37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공고한 직후부터 수행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3.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발표의 시간, 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4.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기간에 유세를 하고 유인물을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단, 선관위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한한다).
5. 온라인 선거인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38조(선거일) 최종후보자 등록일 이후 2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39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서명 아래 기표한다.
2.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와 학생증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8/10	관리 부서 학생처

투표함에 넣는다.

3. 투표소 내에는 선관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4. 투표시간은 08:00 ~ 17:00까지 한다.

5. 투표 및 개표 시에는 선관위와 지정된 참관인 2명이 참석할 수 있다.

6. 온라인 선거인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40조(무효표) 무효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되지 않은 것
4. 기타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한 것
5. 온라인 선거인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41조(당선인) 당선인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총학생회장 당선은 총유권자 1/2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한다.
- ② 정후보로 나올 시에는 후보들이 어느 한 반에 편중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는 제41조 ①, ②항에 대해 예외로 한다.
 1. 2차 등록기간까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총유권자 1/2이상의 투표와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학생회장만을 선출한다.
 2. 재선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2조(당선공고) 당선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후보단의 찬반 투표 시 선관위는 총유권자 1/2이상의 투표와 2/3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후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며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
2. 이의 신청 시 선관위를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없다.

제44조(별칙)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한다.

1. 선관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9/10	관리 부서	학생처

2. 그 외 부정한 선거행위를 한 자
3.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4.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 규정	문서번호	3-4-6		
		제정일	1999.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0/10	관리 부서	학생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